평택시 고덕동 공고 제2026-57호

평택시 고덕1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구내식당 조리원 -

평택시 고덕1동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담당 기간제근로자(조리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재공고 사유: 기존 채용시험 시, 합격자 없음

2026년 9월 28일

고 덕 동 장

1. 모집 근거

가.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나.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담당부서 및 근무지	채용분야	주요 업무내용	근로형태	채용 인원	근무 예정 기간
고덕1동 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 조리원	고덕1동 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배식, 식당 위생관리, 정리, 청소 등*	**기간제근로자 (주25시간)** 월~금요일 08:30~14:30 (휴게시간 12:00~13:00)	**1명**	채용일부터 2026.12.31.까지

※ 주요 업무 내용 세부사항(작업방법)은 [붙임 2] 참조

3. 응시자격 요건

□ 기본요건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10조 제3항)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시험공고일 현재 18세 미만이 아닌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 세부 자격요건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21조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음식 조리**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서류시험 기준과 같음)**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식·중식·양식·일식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시험 기준과 같음)**

4. 시험방법

○ **서류시험**(1차): 서류시험 위원 3인이 **관련경력 기간에 따른 배점 및 가점을 반영**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서류시험 합격자로 결정
(배수범위를 넘어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서류시험 합격자로 결정)

관련경력 기간	배점
없 음	50점
6개월 미만	60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점
1년 이상 2년 미만	80점
2년 이상 3년 미만	90점
3년 이상	100점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함
- 한달 주40시간 근무 기준, 시간 비례 계산
 (재직.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관련 근무경력 사항이 명확히 표기된 증빙서류만 인정)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식·중식·양식·일식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만점의 10% 가점 부여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21조 제1항 [별지 제4호] 기준에 따라 법정가점 대상자는 만점의 5~10%,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만점의 3% 가점 부여

○ **면접시험**(2차): 면접시험 위원 3인이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평정항목에 대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평정항목	세부 배점	배 점			점수
		상(20)	중(10)	하(0)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20				
친절함, 봉사 정신	20				
발전 가능성, 성실성, 긍정적인 태도	20				
안전의식의 실천	20				
협동정신,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20				
합 계	**100**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함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식·중식·양식·일식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만점의 10% 가점 부여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21조 제1항 [별지 제4호] 기준에 따라 법정가점 대상자는 만점의 5~10%,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만점의 3% 가점 부여

5. 최종합격자 결정

○ 1차시험과 2차시험 배점 및 가점을 합하여 가장 높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외의 사람은 점수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3개월 이내 중도 퇴사 등의 사유발생 시 대체 합격자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 가능

6. 시험일정

○ 1차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일정을 통보함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시험채용'게시판에 추후 공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8.(목) (공휴일 제외, 3일간)

○ 접수방법(방문접수)

- 접수장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6길 30
 (고덕동, 고덕1동 개청준비 TF) [붙임 1] 참조
- 접수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우편 · 택배 · 퀵서비스 · 팩스 등 접수는 불가합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 서정리역 2번, 3번 출구 인근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경력 있을 경우)
자격증 사본 1부. (관련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 근무기간, 부서, 직책,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구체적인 근무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야 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 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시험공고일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④ 주민등록표 초본 1부. (현재 주소만 표기)

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⑥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⑧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⑨ [붙임 3]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해당되는 사람만 제출)

8. 보수수준

○ 보　　수

- 기 본 급: 시간당 11,610원 (일급기준 58,050원)
- 주휴수당, 연차수당 별도 지급
- 사회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9. 기　　타

○ 최종합격자 결정 및 공고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와 개별 전화의 방법으로 2026년 10월 말 예정입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 후 또는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2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합격취소 사유 또는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해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고덕1동 개청준비 TF(☎ 031-8024-7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덕1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응시원서 접수 장소)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6길 30 (고덕동 1891-5번지)



<붙임 2>

주요 업무 내용 세부사항(작업방법)

□ 근무 장소

○ 평택시 고덕1동 행정복지센터 3층 구내식당

□ 작업 방법

작업 구분	작업 방법
조리 및 배식 업무	- 월(주)간 식단표(1식4찬이상)에 따라 식단에 짜여진 음식을 조리하여야 한다. - 조리 시 모든 기물을 신중히 다루며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작업한다. - 지정된 배식시간 전까지 배식준비를 완료·배치하여 배식이 원활하도록 한다.
조리실 위생	- 식품 취급장소의 바닥, 선반 및 기구장 등은 1일 1회 이상 철저히 청소 후 건조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조리대, 칼, 도마, 선반 등은 수시로 행주로 닦고 가능한 한 건조하게 보관한다. - 식기류 및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작업이 끝나면 깨끗하게 세척하여 소독한 후 녹슬지 않도록 정리 보관한다.
식품취급 위생	- 생으로 제공하는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어 농약의 잔류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제공한다. - 모든 식품은 바닥에 직접 방치를 금하고 조리가 끝난 음식은 짧은 시간에 제공하되, 시간이 다소 소요될 때는 반드시 뚜껑을 덮어 보관한다. - 냉장고는 매일 1회 반드시 청소, 정비하여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고 식품 보존기간을 준수한다. - 조리사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주방의 청결 유지	- 천장, 벽, 창문, 조리대 등은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환기시설, 방충망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 등 제거한다. - 음식물찌꺼기 및 부산물은 수시로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리하고,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 주방 및 부식 창고 내의 모든 환경은 항상 청결하도록 정리 정돈 및 청소하여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작업 구분	작업 방법
식당 (부대시설 포함)의 청결유지	- 천장, 벽, 창문 등은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 유지한다. - 식탁 및 의자는 매 식사 후 청소하고 정리 정돈한다. - 식당 바닥 및 식당 홀 내의 기타 부분도 1일 1회 이상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기타	-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작업 시 준수사항

○ 아래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행위
-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 공문서 및 집기 비품을 허가 없이 사용 또는 폐기하는 행위
-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태만 한 행위
- 청사 내에서 음주, 도박하는 행위
- 업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공공청사 운영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붙임 3>

채용시험 가점 기준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21조 제1항 관련)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